

정책 및 절차 FI85

제목:
Collections Policy

발효일자:
2016 년 1 월 1 일

적용대상:
Houston Methodist Hospitals(휴스턴 감리교 병원: HM)
Houston Methodist Physician Organization(HM 의사회)

개정/검토일자

2020 년 1 월 1 일

출처:
수익주기협의회

목표검토일자:
2023 년 1 월 1 일

I. 정책

Houston Methodist(휴스턴 감리교 병원: HM)에서 제공한 의료 서비스(채무)에 대한 환자들의 미지불액(채무액)을 전문적이고 정중하며 적시에 회수되도록 하는 Houston Methodist 의 정책입니다. 100% 재정지원할인에 자격이 되지 않는 HM 병원 환자 전원에 대하여 채무와 같은 항목에 대한 납부(지급)는 균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에 의한 조치를 포함하여 취해질 모든 조치사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HM 은 결코 급여 압류(차압), 주된 거주지에 대한 사적 선취특권(유치권), 신용조회기관 통보 또는 기타 법적 조치와 같은 비정상적인 회수조치는 결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 자리 잡은 처리원칙은 환자 전원에 대하여 동등한 존엄과 존중을 통해 대우하고 적절한 청구 및 회수절차가 투명하고 균일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II. 정의

- 환자의 금융부채(비용부담): 해당 보험 또는 제 3 자 부조로 처리되지 못한 금액으로서, 비보험, 보험, 및 일부 보험환자의 미지불액.
- 비보험환자(Uninsured): 보험이나 제 3 자 부조가 없는 환자
- 일부 보험(Underinsured): 비보장 서비스 또는 자신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가입자 공동부담(현금지출) 비용을 부담할 어떤 보험이나 제 3 자 부조가 있는 환자.
- 보험환자(Insured): 보험이나 제 3 자 부조가 있는 환자는 받는 의료 서비스의 일정액을 공제액, 공동보험, 및 환자부담금의 형태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HM 병원에서 재정지원 승인을 얻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또는 할인된 건강관리 서비스

- Bad Debt(대손금: 악성 부채): 첫 번째 청구액 통지로부터 120 일 이내에 수금되지 않은 환자로부터 받아야 할 환자의 금융부채(비용부담액).
- Third Party Collections Agency(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Third Party Collections Agency) - Houston Methodist 를 대행하여 자사 명의로 대손금(악성 채권) 계정의 회수를 시행하는 외부 대행사.

III. 절차

A. 다음은 청구 절차입니다:

1. HM 은 알려진 바, 의료 서비스 제공 전 또는 그 제공 시점(응급의료 제외)에 일체의 환자 부담금에 대한 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경우, HM 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확인된 일체의 의료비용 환자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HM 측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HM 에서는 본 의료 서비스가 비보험환자에게 금융부채(비용부담)를 즉시 청구할 것입니다. 보험환자 및 일부 보험환자의 경우, HM 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후 환자의 금융책임(비용부담)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HM 에서는 이전 청구서의 미납을 이유로 필수 의료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거부, 연기 또는 지불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4. 환자가 재정지원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HM 에서는 환자의 비용부담액을 할인해 드릴 것이며, Financial Assistance Discount Policy(재정지원 할인정책), FI49 를 참고합니다.
5. 환자가 추정적으로 재정지원의 수혜자격이 되는 것으로 평가 및 최대 할인액 미만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자는 회수과정에서 언제든지 재정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최대 할인혜택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HM 에서는 정상적인 청구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최소 120 일간의 기간 동안에 최소 3 회의 시도를 포함하는 금융부채(비용부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7. HM 에서는 요청에 의하여 HM 의 Financial Assistance Policy(재정지원정책)의 쉬운 언어 요약서 사본을 제공하며, 아래 섹션 C 에 있는 정책 가용성의 연락처 정보를 참고합니다.

B. 다음은 수금절차입니다:

1. 환자의 최초 청구서 통지 후 첫 120 일 동안, HM 은 고객계정을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에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지불잔액 전액을 지불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HM에서는 이자나 위약금 없이 최장 36 개월까지의 연납(납부기한연장) 옵션을 제공하며, 연납 옵션 정책, FI86 을 참고합니다.
3. 첫 청구서 통보일자로부터 120 일이 지나도 긍정적인 환자의 대응이 없거나 적극적인 월별 납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HM에서는 채납 환자의 금융부채(비용부담)을 대손금(악성 부채)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HM에서는 승인된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들을 통해 대손금(악성 부채)으로 간주하는 계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 대손금(악성 채권) 분류 또는 대손금 계정을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에 의뢰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언제든지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5. HM 는 대손금(악성 채권)을 의뢰할 승인된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들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에 따라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는 대손금의 회수에 관하여 HM 정책들을 준수해야 하며, 재정지원 및 연납 옵션의 제공에 관하여 동일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6.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는 전화, 이메일, 회수 관련 공문 및 기타 HM 가 승인하고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가운데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대손금의 회수를 지속하게 됩니다.
7. 일체의 제 3 자 미수금 회수 대행사들은 특별한 회수 행위(즉, 신용조회기관 신고,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 또는 선회특권(유치권)의 발부, 급여에 대한 압류(차압))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C. 정책 가용성:

1. 웹사이트 - HM 는 웹사이트 HoustonMethodist.org/Billing 을 통해 이 정책이 유용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독자들이 본 정책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무료 링크도 갖추어야 합니다.
2. 서류 사본 - HM 는 우편 및 이메일, 환자등록처, 집중형 청구사무소, 및 응급 담당과를 통해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 본 정책의 종이재질 무료 사본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영어 및 기타 언어- HM 는 이 정책을 영어 및 의료 서비스의 대상인 여러 주민집단의 다양한 주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연락처 정보 -

Houston Methodist(휴스턴 감리교 병원: HM)
 Centralized Business Office(집중형 영업사무소)
 Attn(앞): Self Pay Unit(자기 부담 가구)
 701 S. Fry Road
 Katy, TX 77450

전화: 832-667-5900(국내) 또는 877-493-3228(무료)

IV. 절차 검토 또는 승인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수익주기협의회
최고재무책임자(CFO) 협의회
Houston Methodist(휴스턴 감리교 병원: HM) 이사회

V. 권위 있는 참고자료:

1. 2010 년도 제정 미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오바마케어: PPACA),
2. 미 세법(IRC) 섹션 501r,
3. 시스템 FI49 재정지원 할인 정책
4. 시스템 FI86 연납 옵션 정책

VI. 승인 임원의 성명 Marc L. Boom, M.D.
직함: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

최고행정책임자(CAO) 인가사항:

(파일상 원래 서명)

M. Boom
사장
최고경영책임자(CEO)
Houston Methodist(휴스턴 감리교 병원: HM)

일자